

과징금의 금액(제26조제1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- 나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2호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, 신규사업·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.
- 다.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(지정수량의 배수)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

2. 과징금 산정기준

- 가.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

등급	연간 매출액	1일당 과징금의 금액(단위: 원)
1	5천만원 이하	7,000
2	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20,000
3	1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	41,000
4	2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68,000
5	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110,000
6	5억원 초과 ~ 7억원 이하	160,000
7	7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200,000
8	10억원 초과 ~ 13억원 이하	240,000
9	13억원 초과 ~ 16억원 이하	280,000
10	16억원 초과 ~ 20억원 이하	320,000
11	20억원 초과 ~ 25억원 이하	360,000
12	25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	400,000
13	30억원 초과 ~ 40억원 이하	440,000
14	4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	480,000
15	50억원 초과 ~ 70억원 이하	520,000
16	70억원 초과 ~ 100억원 이하	560,000
17	100억원 초과 ~ 150억원 이하	737,000
18	150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	1,031,000

19	200억원 초과 ~ 300억원 이하	1,473,000
20	300억원 초과 ~ 400억원 이하	2,062,000
21	400억원 초과 ~ 500억원 이하	2,115,000
22	500억원 초과 ~ 600억원 이하	2,168,000
23	600억원 초과	2,222,000

나.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

등급	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(지정수량의 배수)		1일당 과징금의 금액 (단위 : 천원)
	저장량	취급량	
1	50배 이하	30배 이하	30
2	50배 초과 ~ 100배 이하	30배 초과 ~ 100배 이하	100
3	100배 초과 ~ 1,000배 이하	100배 초과 ~ 500배 이하	400
4	1,000배 초과 ~ 10,000배 이하	500배 초과 ~ 1,000배 이하	600
5	10,000배 초과 ~ 100,000배 이하	1,000배 초과 ~ 2,000배 이하	800
6	100,000배 초과	2,000배 초과	1000
비 고			
1.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.			
2. 자가발전,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표 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.			